

해상풍력 이해관계자 협의: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가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Ocean Energy
Pathway

협력 기관



ROOTENERGY



목차

요약	3
주요 결과	4
정책 제언	5
1 서론	6
1.1 연구 배경	6
1.2 연구 목적과 범위	7
1.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계 보고서	7
2 해외 사례	9
2.1 영국: 절차의 법정화 및 통합 체계	9
2.2 일본: 법정 협의회 및 입찰 연계 협의	16
2.3 덴마크: 공간 사전조정 및 원스톱 인허가	20
3 국내 사례	26
3.1 성공 사례: 공공주도 및 민간주도 모델	26
3.2 갈등 사례: 반복되는 패턴과 교훈	37
4 비교 분석: 여섯 가지 요인	41
4.1 요인 1: 법적 강제력과 협의의 법정화	41
4.2 요인 2: 협의 시점의 전진 배치	42
4.3 요인 3: 조직 단위 대표성 및 양측의 균형	43
4.4 요인 4: 정보 투명성 및 전문가 지원	44
4.5 요인 5: 이익공유 및 장기 모니터링	44
4.6 요인 6: 통합 시스템 설계	45
4.7 종합: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	46
5 정책 함의	48
5.1 국내 협의 시스템 구축 방향	48
5.2 결론	50

요약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큰 장벽 중 하나는 체계화된 이해관계자 협의의 부재였다.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개발을 추진했고, 그 결과 갈등이 지역마다 반복되며 다수의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했다.

2025년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발전지구 지정 과정 전반에 협의를 의무화하는 공공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제 관건은 협의 체계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설계 방식이다.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협의를 어느 시점에 시작하며, 합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모두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영국·일본·덴마크의 협의 모델을 국내 사례와 함께 분석하여, 협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여섯 가지 구조적 요인을 도출한다. 이 분석 내용은 해상풍력법 시행령 수립 과정에서 정책결정권자에게 참고자료로 사전 제공되었으며, 이 보고서는 제시한 내용을 공개용으로 정리한 것이다.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다.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 해외 성공 사례와 국내 갈등 사례의 차이는 협의를 강제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구조의 유무였다.



주요 결과

법적 강제력이 협의 실효성의 기초다

영국·일본·덴마크 세 나라 모두 ‘협의 없이는 다음 단계로 진행 불가’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추고 있다. 이는 협의 없이 인허가가 진행된 국내 갈등 사례들과 정면으로 대비된다.

협의 시점이 협의의 성격을 결정한다

투자 이전의 협의는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는 동기를 만들지만, 투자 이후의 협의는 이미 결정된 사업에 대한 수용을 요구하는 절차로 변질될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국내 갈등 사례들은 예외 없이 인허가가 이루어진 이후 협의가 시도되었다.

조직 단위 대표성은 설계되어야 한다

해외 모델들은 어업단체를 협의의 일차 당사자로 지정하고, 양측에 공식 대표를 두어 어느 한쪽이 협의를 주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어업인이 조합을 통해 대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별 어업인과의 직접 소통도 함께 권고된다.

정보 투명성은 대등한 협의의 전제조건이다

독립적 전문가 분석에 기반한 사업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한 숙의를 가능하게 한다. 반면, 정보의 비대칭은 협의 과정을 상호 불신의 장으로 전락시킨다.

보상에서 이익공유로의 전환이 수용성을 높인다

발전량과 주민 수익을 연동하고 장기 모니터링을 결합하면, 주민은 피해 보상의 대상에서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는 참여자로 전환된다.

개별 제도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이 실효성을 만든다

협의, 정보 공개, 모니터링은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설계의 과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가 아니라, 그 수단들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있다.

정책 제언

01 시행령에 협의의 법적 강제력을 명시한다

민관협의회 합의를 발전지구 지정의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02 협의 시점을 기본설계안 확정 이전으로 앞당긴다

민관협의회는 후보 해역 선정 단계에서부터 구성되어야 하며, 필요 시 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경계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03 수협·어촌계를 통한 조직 단위 대표성을 협의 구조에 반영한다

수협과 어촌계 모두 협의회의 공식 구성원으로 지정하고, 조합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해야 한다.

04 정보 투명성을 위한 통합 플랫폼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축한다

발전지구와 어장 정보를 통합한 공개 플랫폼을 구축하고, 협의회에 공정한 기술 분석을 제공하는 전문가 워킹그룹을 함께 운영해야 한다.

05 발전량 연동 이익공유와 장기 모니터링을 제도화한다

발전량과 연계된 이익공유를 법제화하고, 어업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협의회 정기 보고를 의무화하며, 지역 공존 계획을 사업자 선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06 전체 과정을 개별 조치가 아닌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사전 협의부터 구역 지정, 입찰, 공사, 모니터링에 이르는 각 단계는 다음 단계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제대로 설계된 협의는 사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다.

1 서론



1.1 연구 배경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큰 장벽 중 하나는 체계화된 이해관계자 협의의 부재였다.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개발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누구를 협의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했고, 그 결과 지역마다 갈등이 반복되었다.

2025년 3월 제정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은 이 구조를 전환한다. 국가가 발전지구를 직접 지정하고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공공주도 체계로 전환하며,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협의를 의무화한다. 2026년 3월 26일부터 3년이 지나면 개별 사업 방식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 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협의는 어느 단계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합의에 이르기 위한 기준은 무엇으로 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시행령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며, 그 설계 방식에 따라 법의 실효성이 결정된다. 해상풍력 선도국들은 이미 수십 년째 이 질문에 답해왔고, 국내 역시 참고할 수 있는 성공·실패 사례가 축적되어 있다. 이 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형 협의 시스템 설계에 활용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다.

1.2 연구 목적과 범위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 부문의 국내외 이해관계자 협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 주요국(영국·일본·덴마크) 사례와 국내 사례를 비교하여, 협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한 조건을 검토한다.

주요 독자는 두 그룹이다. 해상풍력법 체계 안에서 발전지구 지정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설계·운영하는 정책결정권자, 그리고 기존 인허가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다. 후자는 해상풍력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협의 설계 원칙은 갈등 예방과 사업 리스크 저감에 유효하다.

이 보고서의 분석과 제언은 시행령 제정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당시 정책결정권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1.3 보고서의 구성 및 연계 보고서

이 보고서는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다. 2장은 해외 성공 사례를 국가별로 심층 분석하여 각국의 협의 모델이 어떻게 설계되고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3장은 국내 사례를 성공 사례와 협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나누어 분석하고, 갈등 해소 시도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다. 4장은 국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을 도출한다. 마지막 5장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함의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와 함께, 민관협의회의 구체적인 설계 방법을 다루는 설계 가이드

『한국형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설계 가이드: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에서 실무까지』(이하 설계 가이드)가 별도로 마련되었다. 이 보고서가 ‘왜 협의가 중요한가’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다면, 설계

가이드는 ‘어떻게 민관협의회를 설계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공한다. 두 보고서를 통해 전략적 이해와 실무적 적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이 이 보고서와 설계 가이드의 제언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는 설계 가이드에서 부록 C로 정리하였다.



2 해외 사례



영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높은 해상풍력 설비 용량과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2019년 법 제정 이후 한국의 해상풍력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의 법정협의회 체계를 운영해 왔다. 덴마크는 협의를 전담하는 기구를 두지 않는다. 그 역할은 공간계획과 인허가 조건이 맡는다. 세 나라 모두 협의를 임의적인 관행이 아니라 법·제도적 구조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2.1 영국: 절차의 법정화 및 통합 체계

영국 모델의 핵심은 협의 절차를 법정 문서로 규정하고, 이를 인허가 체계와 직접 연계했다는 데 있다. SOCC(협의계획서), FLOWW(국가 단위 협의 프레임워크), CFWG(상업어업실무그룹), CFLO/FIR(개발사 측·어업계 측 연락관), KIS-ORCA/Kingfisher Bulletin(정보 플랫폼), FMMS(어업 모니터링·완화 전략)라는 여섯 가지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체계를 운영한다.

2.1.1 법적 근거

영국 해상풍력의 법적 기반은 「Planning Act 2008」에서 출발한다. 이 법에 따라 해상풍력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프라 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을 진행하려면 개발동의(DCO, Development Consent Order)를 받아야 한다. 이때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법정 협의는 인허가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이를 구체화하는 핵심 수단이 지역사회협의계획서(SOCC, Statement of Community Consultation)다.

SOCC 의의

SOCC는 사업자가 ‘누구와, 언제, 어떻게 협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문서로, DCO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작성·공표해야 한다.

SOCC는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다. 사업자는 SOCC를 작성한 뒤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확정된 SOCC는 신문 공고, 온라인 게시, 공공장소 비치 등을 통해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표된다. 이후 사업자는 SOCC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주민 설명회, 전시회, 온라인 협의 등을 진행하고, 수렴된 의견과 그 반영 내역을 협의보고서(Consultation Report)로 정리해 제출한다.

법적 강제 메커니즘

SOCC의 핵심은 법적 강제력에 있다. 국무장관은 DCO 신청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지방정부가 제출한 ‘협의 적정성(Adequacy of Consultation)’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며, SOCC 준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사업자가 SOCC를 제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작성한 경우, DCO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SOCC를 지키지 않으면 DCO 신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초기 단계부터 협의를 시작하고 그 이행 기록을 남겨야 할 절차적 유인이 생긴다.

Hornsea Project Three 사례

2016년 주민 협의를 시작해 2020년 12월 개발동의를 받은 Hornsea Project Three(승인 용량 약 2.4GW)는 SOCC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개발사 오스테드(Ørsted)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2회 이상의 공개

설명회를 열었고, 지역 내 모든 가구에 프로젝트 정보와 의견 제출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발송했다. 그 결과 1,600명 이상의 주민이 설명회에 참석했고, 온라인 설문과 서면 제출을 통해 2,000건 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다.

제출된 의견에는 구체적인 피드백이 돌아갔고, 협의 결과는 최종 설계에 반영되었다. SOCC 체계가 요구하는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프로젝트는 2020년 12월 개발동의를 받았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SOCC가 작동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절차상의 의무와 그 결과를 직접적으로 연결한다. ‘협의하라’는 추상적 요구가 아니라, DCO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SOCC 제출·이행을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건을 둔 것이다.

둘째, SOCC는 협의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공표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은 사업자의 실제 협의 행위가 문서상의 약속과 부합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2.1.2 운영 구조·대표성·중재 메커니즘: FLOWW, CFWG, CFLO/FIR

FLOWW, CFWG, CFLO/FIR 구조는 각각 협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층위를 담당한다.

FLOWW: 국가 단위 협의 프레임워크

FLOWW(Fishing Liaison with Offshore Wind and Wet Renewables)는 2002년 설립되어 The Crown Estate가 운영을 지원하는 국가 단위 협의 프레임워크다. 어업단체, 재생에너지 개발사, 정부기관, The Crown Estate가 참여하며, 해상풍력과 어업 간의 상충 이슈와 공존 방안을 논의한다. FLOWW의 핵심 산출물은 2008년 처음 발간되고 2014년 개정된 뒤 2025년 11월 최신 개정된 「FLOWW 모범사례 지침(FLOWW Best Practice Guidance)」으로, 개발사와 어업인 간 효과적인 협의의 원칙과 절차를 문서화하고 있다. 이 지침은 이후 프로젝트 단위 CFWG의 운영 기준이자 현장 단위 CFLO/FIR 지정의

기준이 된다.

CFWG: 정례 협의 구조

상업어업실무그룹(CFWG, Commercial Fisheries Working Group)은 프로젝트별로 구성되는 정례 협의체이지만, 스코틀랜드의 Forth·Tay 프로젝트처럼 인접 프로젝트가 동일한 어업 이해관계자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CFWG가 여러 프로젝트를 함께 다루기도 한다. 개발사, 어업인 대표, 지방정부, 그리고 잉글랜드의 해양관리청(MMO) 또는 스코틀랜드의 해양국(Marine Directorate)이 참여하며, 월간 또는 분기별로 정례 회의를 연다. 논의 안건에는 조사·공사 일정 조정(주요 조업기 회피), 터빈 위치·배열 조정(어장과의 중첩 최소화), 항로 확보(기존 항로 유지), 해저 케이블 경로 미세조정(어구 손상 위험 최소화), 안전구역 설정, 보상 산정 방식 수립 등이 포함된다.

회의록은 공식적으로 기록되며, 이후 분쟁이나 보상 협상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Hornsea, Dogger Bank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 CFWG는 공사 및 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 수년간 지속적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Hornsea Project Three에서는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일부 터빈 위치가 조정되었고, 주요 조업기를 피하도록 공사 일정이 재조정되었다.

CFLO와 FIR: 현장 단위 연락 체계

영국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개발사 측 어업연락관(CFLO, Company Fisheries Liaison Officer)과 어업계 대표(FIR, Fisheries Industry Representative)를 지정한다. FIR은 개발사가 비용을 부담하되 어업계와 협의하여 선임하며, CFLO의 상대역으로서 어업계의 단일 창구 역할을 한다. FIR에는 대개 전직 어업인이나 어업 단속 경험자가 선임된다. 지역 어업인과 쌓아온 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어업계의 균형 잡힌 입장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의 핵심은 양측 간의 균형이다. 개발사 측과 어업인 측 모두에 공식 연락관을 두면 어느 한쪽이 협의 과정을 주도할 여지가 줄어든다. CFLO와

FIR은 공사 일정, 항로, 어구 위치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각각 자기 측을 대표하는 지정된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이 구조가 작동하는 이유는 각 층위가 서로 다른 범위의 조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FLOWW는 국가 단위에서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수립한다. CFWG는 이를 프로젝트별 사안에 정례적으로 적용한다. CFLO와 FIR은 현장에서의 일상적 소통을 담당한다. 어업 이해관계자는 각 층위마다 지정된 창구가 있으므로 프로젝트 단위에서 제기된 우려는 필요시 상위로 전달될 수 있고, 국가 단위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은 개별 프로젝트에 일관되게 적용된다. 정례 회의 일정은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친 연속성을 유지하고, 추가 회의 소집 옵션은 긴급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2.1.3 정보공개: 실시간 정보 플랫폼 KIS-ORCA/Kingfisher Bulletin

정확한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어업 협의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KIS-ORCA는 해저 케이블, 터빈 배열, 변전 플랫폼, 케이블 보호 장치 등 설치된 해상 인프라의 위치를, 선박용 항해 플로터와 호환되는 형식으로 지도화하여 제공한다. Kingfisher Bulletin은 개발사가 예정된 조사, 공사 작업, 항행 위험 요소에 관한 지역 통지(Local Notification)를 발행하는 알림 서비스다. 예컨대 Hornsea Three 공사 기간에 개발사는 매주 작업 통지를 발행했다. 여기에는 현장 투입 선박, 경비선 위치, 각 구역의 작업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정보는 공사 단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갱신되었다. 이 두 수단을 통해 어업인들은 개발사와 동일한 수준의 기초 운영 정보를,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독립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FLOWW 모범사례 지침」(2025)은 두 채널에 대한 기대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 개발사는 계획 중이거나 가동 중인 인프라의 위치 정보를 KIS-ORCA에 제출해야 하며, 사전 공사조사·공사 작업·어구 철거·주요 정비 작업은 최소 14일 전, 긴급 작업은 0~24시간 전까지 Kingfisher Bulletin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이 지침은 법이 아니라 자발적 모범관행이지만, 예외적인 상황에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어업인 측에도 자신의 플로터를 최신 정보로 유지하고 자신이 조업하는 구역에 대한 회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공유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어업인은 케이블 위치, 조사 일정, 공사 일정과 같은 기술적 세부사항을 개발사를 거치지 않고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CFWG와 같은 구조, 그리고 CFLO/FIR 채널을 통한 논의를 한층 실질적으로 만든다. 논의가 한쪽이 다른 쪽에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공통의 사실 기반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넓게 보면, 이 정보 인프라는 잠재적 갈등을 사후 분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 사전 조정의 대상으로 다루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다.

2.1.4 모니터링: FMMS 하의 장기 모니터링과 적응적 관리

영국은 인허가 단계 이후에도 어업 모니터링을 제도화했다. 스코틀랜드의 완화·모니터링·소통 계획(Fisheries Management and Mitigation Strategies, 과거 명칭은 어업관리·완화전략, FMMS)과 잉글랜드의 어업연락·공존계획(Fisheries Liaison and Co-Existence Plan, FLCP)이 그것이다. 이들 계획은 공사 및 운영 단계 전반에 걸쳐 어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고 관리되도록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대표 사례로서 스코틀랜드 모델을 편의상 FMMS로 지칭하여 설명한다.

FMMS의 구조

FMMS는 어업 완화·모니터링 전략을 담은 문서로, 사업자는 인허가를 신청할 때 이를 함께 제출한다. FMMS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완화 조치: 협의 프로토콜, 공사 일정 조정, 공사 구역 축소, 항로 확보, 안전구역 설정
- 모니터링 계획: 조업 활동, 어장 변화, 어족자원 분포에 대한 지속적 추적
- 보상 절차: 피해 추정 및 보상 기준
- 적응적 관리: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완화 조치 갱신

적응적 관리는 FMMS의 명시적 원칙이다. 모니터링을 통해 인허가 단계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영향이 확인되면, FMMS를 갱신하여 추가 완화 조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는 영향 관리를 인허가 단계에서 종결되는 일회성 평가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무로 다룬다는 뜻이다.

해양국(Marine Directorate)의 승인과 점검

FMMS는 스코틀랜드 해양국의 승인을 받는다. FMMS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해양국은 개입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협의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점검하는 장치가 된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첫째, 계획 단계에 국한된 협의만으로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운영이 시작된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FMMS는 모니터링 의무를 운영 단계까지 확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소한다.

둘째, 이 구조의 신뢰성은 사업자 스스로의 평가가 아니라 독립적 검증에 근거한다. 해양국의 승인 절차는 모니터링 결과가 사업 주체와 독립된 주체의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체 보고만으로는 확보할 수 없는 객관성을 부여한다.

2.1.5 시사점: 절차의 법정화와 시스템 설계

영국 사례는 어업 협의가 명확한 범위와 지정된 참여자를 갖추고 여러 층위에 역할과 책임이 분담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이는 국내 해상풍력의 민관협의 모델 설계와 운영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SOCC 제도처럼 협의 과정 자체를 법적으로 문서화해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검증 불가능한 주장을, 누구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협의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단일 기구가 아니라 다층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영국은 FLOWW·CFWG·CFLO/FIR로 구성된 구조를 통해 논의 층위와 공간적 범위에

따라 역할을 분리한다. 나아가 CFLO/FIR처럼 명확한 대표성과 역할을 부여한 공식 창구를 통해 참여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협의 결과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연결되어야 한다. FMMS와 CFWG처럼 협의 내용이 완화·모니터링·시정 조치로 전환되어 공사 및 운영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정보 인프라 구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KIS-ORCA와 Kingfisher Bulletin과 같은 통합 해상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업인, 지역 주민, 연구자가 동일한 데이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협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영국 모델에서 주요 협의 수단들은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로 묶여 운영된다. 국내 협의 체계 역시 법적 강제력, 협의 시점, 정보 투명성, 지속적 소통, 장기 모니터링이 개별 조치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단계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2 일본: 법정 협의회 및 입찰 연계 협의

일본은 2019년 「해역 이용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법」(이하 해역이용법)을 제정하면서 해상풍력 촉진구역 지정 절차에 법정협의회를 의무화했다. 국가가 입지 선정을 주도하며, 협의는 구역 지정의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해상풍력법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일본은 직접적인 참고 대상이 된다.

2.2.1 법적 근거 및 협의체 제도화

해역이용법은 해역을 준비구역, 유망구역, 그리고 공개입찰의 대상이 되는 촉진구역의 3단계로 구분하는 지정 절차를 마련했다¹. 이 법은 구역 지정 시 어업에 중대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상풍력과 어업 간의 관계를 입지 선정의 초기 단계부터 공식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사후적인 완화 조치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정협의회는

1 (주1) 일본의 해역이용법에 따르면, 후보 해역은 준비구역(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초기 단계에서 식별되는 후보지) → 유망구역(법정협의회가 소집되어 상세한 풍황·해저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 → 촉진구역(점용권이 입찰에 부여되는 공식 지정 해역)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유망구역 단계에서 구성되어 구역 경계와 개발 조건에 관한 핵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정협의회 구성

일본의 법정협의회에는 정부(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농림수산업, 지방자치단체), 민간(어업인, 지역 주민, 환경단체), 그리고 해양·환경·수산·에너지 분야의 독립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논의 안건과 실질적 의사결정 권한

협의회의 주요 논의 안건에는 어장과 중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촉진구역 경계 조정, 어업 영향 평가와 완화 방안, 환경영향평가 결과 검토, 지역경제 기여 방안, 어업 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가 구역 지정에 대한 최종 행정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지만, 절차 내에서 협의회의 역할은 실질적인 무게를 지닌다. 협의회에서 제기된 어업이나 지역 수용성 관련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촉진구역 지정이 보류되거나 추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어장과 중첩을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된 후보 해역도 있다. 법은 협의회 구성원이 합의에 이른 사항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후 정부가 구역 지정과 입찰 기준을 결정할 때 협의회 합의가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완전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명확한 어업 보상 기준 마련이나 주요 조업기를 피한 공사 일정 수립과 같은 조건을 지정에 부가하여 합의를 유도한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일본은 해역이용법을 통해 사업자가 협의에 임하는 조건 자체를 바꾸었다. 법 제정 이전에는 협의가 임의적이었고, 협의를 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절차적 불이익이 없었다. 현행 체계에서는 협의회의 결론이 해당 구역의 지정 절차 진행 여부와 그 방식을 좌우하므로, 협의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지 않은 구역은 입찰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 어업인은 개인이 아니라 어업협동조합을 통해

참여하는데, 이를 통해 내부적으로 조율된 입장을 협의회에 제시할 수 있고 협의 과정 자체에서 흩어진 의견을 모으는 데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영국 모델의 FIR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2.2.2 입찰 평가와의 연계

일본 모델에서는 협의 결과가 사업자 선정에 직접 반영된다. 협의회 논의 결과는 공개입찰 절차에 그대로 반영된다. 입찰은 공급가격과 사업 실행 가능성에 각각 절반씩 배점된 24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실행 가능성 항목 안에서 어업과의 조정 및 공존은 지역경제 기여를 위한 다른 조치들과 함께 명시적인 평가 기준으로 다뤄진다. 사업자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어업 협의·공존 계획을 입찰 서류의 일부로 제출해야 한다. 2·3차 입찰에 적용된 평가 기준에서는 주변 항로·어업과의 조정·공존에 240점 중 10점이 배정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국가 경제 파급효과와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함께 포괄하는 40점 항목에 속한다. 2026년 6월 개정된 공모 지침 역시 가격과 실행가능성을 120점씩 균등 배분하는 구조와, 지역 조정·경제 기여에 대한 40점 배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22년 9월 촉진구역으로 지정된 아키타현 오가시·가타가미시·아키타시 해역의 경우, 입찰 평가 기준에는 어업계와의 공존 방안,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의 반영, 어업 영향 대응 계획이 포함되었다. 이는 협의회 논의가 독립적인 절차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이후의 사업자 선정 절차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사업자에게 입찰 서류의 일부로 어업 공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협의 결과가 선정 단계에서 직접적인 절차적 결과로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SOCC가 협의 과정의 최소 기준을 설정할 뿐 협의의 질을 경쟁 평가와 직접 연결하지는 않는 영국 모델과 구조적으로 다르다. 다만 현재의 배점(40점의 지역 조정·파급효과 항목 안에서 어업 공존에 특정된 10점)이 유의미한 유인으로 기능하기에 충분한지는 여전히 열린 질문이며, 실제로는 공급가격이 그동안 입찰 결과를 좌우하는 지배적 요인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2.2.3 이행 관리

사업자 선정 이후, 합의된 협의 결과는 점용계획과 촉진구역별로 발급되는 공모 지침 모두에 반영된다. 공모 지침은 어업계·지역사회와의 협력 방향, 어업 영향 평가의 방법과 범위, 지역사회와의 공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승인된 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 모니터링, 사업 후 조사 결과를 포함한 사업 이행 상황을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서 추가 협의나 정보 공유가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이는 협의회를 통해 다루어진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협의회는 구역 지정 단계에서 해산되지 않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이행을 관리·감독하는 공식적인 역할을 유지한다.

촉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자가 선정된 뒤에는, 사업자가 터빈 배치, 항로·어장 조정, 공사·운영 일정, 조업 방해 최소화 방안, 보상 방안 등에 대해 해당 지역 어업협동조합과 직접 이행 단계의 협상을 진행한다. 어업 영향 완화와 보상의 구체적 조건은 통상 이 이행 단계에서, 협의회가 수립한 큰 틀의 원칙을 바탕으로 확정된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협의 결과가 점용계획과 공모 지침 양쪽에 조건으로 명시되므로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법적 구속력을 유지한다. 사업자와 어업협동조합 간 이행 단계 협상은 협의회가 수립한 큰 원칙을 지역 여건에 맞는 구체적 방안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

2.2.4 시사점

일본 모델은 국내에 네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협의-지정-공개입찰의 순서가 반드시 그 순서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국내 해상풍력법도 이 순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이 협의회 구성 시점, 협의 기간, 합의 기준을 구체화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둘째, 협의회 범위와 권한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험은

협의회가 지정 절차에서 수행하는 역할, 즉 지정이 지연되거나 추가 요건이 부과될 수 있는 조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될 때 협의회가 더욱 실질화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협의회 권한과 한계가 모호하면, 양측 모두의 참여 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협의의 질이 입찰 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도 어업 협의 계획, 지역 고용 목표, 보상 기준을 사업자 선정의 명시적 평가 기준으로 규정하고, 선정 이후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일본의 경험은 개별 어업인이 아니라 조직화된 어업 단체를 통한 참여가 내부적으로 조율된 입장을 협의회에 전달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협의를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국내 시행령이 어업 이해관계자의 대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협의의 속도와 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은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왔고, 그 경험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다듬어왔다. 국내 해상풍력법과의 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협의회 권한, 입찰 평가 기준, 어업단체의 역할, 이행 관리 방식에 관한 일본의 축적된 실무 경험은 국내 시행령 설계에 직접 참고할 수 있는 준거점을 제공한다.

2.3 덴마크: 공간 사전조정 및 원스톱 인허가

덴마크는 해양공간계획(MSP), 환경영향평가(EIA), 인허가 조건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구조를 통해 해상풍력과 어업의 관계를 관리하며, 덴마크에너지청(DEA)이 원스톱 인허가 기관 역할을 한다. 협의와 보상은 별도 절차가 아니라 인허가 조건에 담긴다. 사업자는 발전허가를 받으려면 덴마크어민생산자조합(DFPO)과 협상을 마쳐야 하고, 이 요구가 프로젝트마다 반복되면서 협의가 상시화된다. 덴마크 어업법에 따라 영향을 받는 해역에서 통상적으로 조업하던 어업인은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협상해야 한다. 실제로는 Horns Rev와 Kriegers Flak 프로젝트처럼 개별 선박 단위가 아니라 어업계 대표 조직을 통해 집단적으로 협상이 이루어져 왔다.

2.3.1 법적 근거와 인허가 구조

덴마크 해상풍력은 주로 재생에너지법(VE-loven), 전력법,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며, DEA가 입찰·환경영향평가·사전조사·공사·운영허가 발급을 총괄하는 주된 인허가 기관 역할을 한다. 지정된 입찰 부지에 대해서는 덴마크 정부가 입찰 전에 해저, 풍향, 환경, 지형 조건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를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공개한다. 이러한 조사를 공적 주체가 한 번만 수행함으로써, 여러 사업자가 같은 해역을 반복적으로 조사하며 어업계와 해양환경에 주는 부담을 덜고, 입찰 참가자들의 불확실성도 줄일 수 있다.

사전 갈등 해소 수단으로서의 해양공간계획

덴마크는 2021년 해양공간계획법에 따라 첫 해양공간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통해 해상풍력·어업·항로·보호구역을 하나의 계획 체계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 해상풍력 후보 해역은 국가 단위에서 지정되며, 개발 해역을 확정하기 전에 기존 어장 및 보호구역과의 관계를 먼저 검토한다. 어업단체, 지방정부, 환경단체, 주민은 공청회와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하며, 실제로 어업 또는 환경적 이유로 일부 해역이 조정되거나 제외된 사례도 있다.

가장 중요한 어장과 민감한 해양 서식지를 계획 단계에서 미리 식별하고 제외함으로써, 해양공간계획은 프로젝트 단계에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 계획은 또한 특정 용도로 실제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업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도 계속 이용될 수 있는 넓은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데, 이를 통해 충분한 정보가 확보되기 전에 선택지를 미리 좁히지 않고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때마다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그 결과 개별 프로젝트가 협의 단계에 들어설 무렵에는 입지가 적절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계획 단계에서 이미 정리되어 있고, 논의는 부지의 적합성 여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완화·공존 방안으로 좁혀진다. 해양공간계획은 갈등을 다루는 자리 자체를 옮겨놓는 셈이다. 지연 비용이 크고 입장이 이미 굳어진 프로젝트 단계가 아니라, 아직 대안이 남아 있는 계획 단계에서 갈등을 처리하도록 만든다.

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모든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범위 설정, 초안 EIA 공표, 그리고 주민·어업인·지방정부·환경단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공청회 절차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항로 조정, 공사 시기, 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인허가 조건에 반영될 수 있으며, 최종 EIA 보고서는 DEA의 인허가 결정에서 핵심 근거가 된다.

EIA와 공청회 절차는 별도의 협의 절차가 아니라 인허가 절차의 일부로 운영된다. Thor 프로젝트의 경우 초안 계획과 초안 전략환경평가가 공표된 뒤 8주간의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협의와 추가 조사를 거친 뒤 DEA는 사업 부지 경계를 440km²에서 286km²로 축소 조정했다. 이는 덴마크 체계에서 공청회가 단순한 절차적 요식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조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3.2 운영 구조

중앙집중형 원스톱 인허가 및 프로젝트 단위 협상

덴마크의 운영 구조는 국가 단위의 중앙집중형 원스톱 인허가와, 사업자·어업계 대표 간의 프로젝트 단위 협상을 결합한 형태다. DEA는 입찰·인허가·EIA를 총괄하며, 단계마다 공청회를 통해 어업인·주민·지방정부·NGO의 의견을 수렴한다.

DEA의 지침 문서 「Offshore Wind and Fisheries in Denmark」는 사업자가 발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업 영향에 대해 어업인 측과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손실 평가는 독립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근거로 보상 수준이 협상된다.

실제로는 이것이 2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전략적 단계에서는 해양공간계획, 입찰 설계, 환경 지침이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프로젝트 단계에서는 사업자와 DFPO가 협상 테이블을 구성해 공사 구역·시기, 케이블 설치, 안전구역, 보상을 논의한다. 영국의 CFWG처럼 정례적으로 열리는 회의체는 없다. 그 자리를 인허가 조건과 반복되는 협상 관행이 메운다.

2.3.3 대표성: 조직·기관이 기본 단위

덴마크의 대표 구조는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기관을 기본 단위로 삼는다.

어업 측에서는 DFPO와 지역 어업인단체가 인허가·해양공간계획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와 보상을 협상하는 공식 협의 주체 역할을 한다. 개발사 측에서는 프로젝트 회사가 인허가 조건 이행의 책임을 지며, 일부 프로젝트는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 어업연락관을 임명해 조사·공사 일정과 조업 활동을 조율한다. 행정 측에서는 DEA와 관련 기관이 인허가 조건 설정, EIA·해양공간계획 검토, 보상·완화 조치의 적정성 평가와 같은 심사·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협의와 협상의 결과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 조직과 기관의 공식 입장으로 기록되며, 이는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참조할 수 있는 문서화된 근거가 된다.

2.3.4 지역 수용성 확보 메커니즘: 보상, 보너스, 공존

덴마크는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보상 협상에만 의존하지 않고, 제도화된 메커니즘을 함께 운영한다.

부동산 가치 보상 제도(Værditabsordningen)는 재생에너지 시설로 인해 인근 주거용 건물의 자산가치가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한 경우 소유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도입된 VE-보너스 제도는 터빈 높이에 따라 일정 반경 내 주민에게 시설의 발전량과 연동한 연간 현금 보너스를 지급한다. 두 제도 모두 해상풍력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부담에는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통된 정책 원칙을 반영한다.

보상 및 공존 시범사업

문서화된 어업 손실에 대한 보상은 독립 컨설팅기관의 어획량·매출 감소 및 장비 피해 평가를 거친 뒤, 사업자와 DFPO 간에 보상 수준과 공사·항로 조정에 관한 협상으로 결정된다. 조사 및 공사 단계에서는 항행 통지, 전자 해도, 현장 연락

등을 통해 작업 위치와 일정에 관한 사전 정보가 제공되어 해상에서의 충돌을 줄인다.

Kriegers Flak 해상풍력 단지에서는 풍력단지 구역 내에서 해조류와 홍합을 기르는 공동입지(co-location) 시범 연구가 진행되어 2024년 첫 수확 결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아직 상설 제도가 아닌 연구 성격이 강하지만, 해상풍력과 어업 활동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2.3.5 시사점

덴마크 사례는 국내에 네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전략적 계획, 프로젝트 인허가, 현장 조정 간의 관계를 각각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된, 서로 연결된 단계로 설계해야 한다. 덴마크에서는 해양공간계획이 해상풍력을 어디에 배치하고 어느 해역을 어업이나 보호를 위해 남겨둘 것인지를 큰 틀의 공간적 질문을 다루고, 프로젝트 단위의 EIA와 인허가 조건이 완화·보상 의무를 구체화하며, 공사 중 현장 조정이 조업과 공사 간의 충돌을 관리한다. 국내 민관협의회 역시 자신이 어느 단계의 의사결정을 다루는지, 그리고 병행하여 운영되는 계획·인허가·모니터링 절차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덴마크 사례는 상설 협의체 없이도 상시적인 협의가 제도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덴마크는 협의와 보상 요건을 인허가 조건으로 부과하며, 사업자와 DFPO 간의 반복적인 협상이 사실상 정례적인 협의 구조를 만들어낸다. 국내 민관협의회 역시 일회성 기구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인허가·사업 이행·운영·사후 단계 전반에 걸쳐 협의 내용과 합의사항이 지속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셋째, 개인이 아니라 조직과 기관을 통한 대표성은 시간이 지나도 책임 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덴마크에서는 DFPO, DEA, 프로젝트 회사가 명확한 역할을 가진 주체로 반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대신해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이는 나중에 갈등이 재발했을 때 중요해진다. 국내 민관협의회 역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각 주요 그룹이 어떻게

대표되는지, 대표자는 어떻게 추천 또는 선출되는지, 어떤 임기와 이해상충 기준이 적용되는지, 각 부문마다 공식 연락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넷째, 보상, 상호이익, 공존은 개별 조치가 아니라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덴마크의 부동산 가치 보상, VE-보너스, 어업 보상 협상, 공동입지 시범사업은 서로 다른 정책 수단이지만, 에너지 전환으로 발생하는 부담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한다는 공통된 원칙을 공유한다. 국내 민관협의회 역시 보상, 지역 상생 프로그램, 장기적 공존을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다루도록 설계하고, 협의 결과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계획·협약·모니터링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3 국내 사례



3.1 성공 사례: 공공주도 및 민간주도 모델

국내에도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사업을 진전시킨 사례가 있다. 지자체 A는 공공주도형 민관협의회를 활용해 입지를 확정했고, 지역 B는 독립적 사무국과 전문가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주도 방식을 통해 합의에 도달했다. 두 사례 모두 익명으로 소개하며, 아래 서술은 각 사례 진행 과정에서 작성된 사업 문서, 회의록, 설문 결과 등 문서화된 절차와 기록된 결과에 한정한다.

3.1.1 지자체 A: 공공주도 모델

지자체 A 사례는 해상풍력법 제정 이전의 기존 인허가 체계에서, 예비지구가 공식 지정되기 전 시점부터 입지 선정과 이해관계자 소통 절차를 병행 추진한 지자체의 사례다. 해당 해역은 조업 활동이 활발하고 인근 주민과 어업인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어, 입지 발굴 초기 단계부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인근 해역에서는 이미 여러 민간 사업자가 각자 별도로 풍향 계측 설비와 인허가를 추진한 이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사업이 중복 추진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지자체 A가 활용한 제도적 경로는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관할 해역에서 후보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한 뒤 지정을 신청하는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 제도로, 지침상 민관협의회 운영이 의무화되어 있고 지정 신청 평가에서 주민수용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자체 A는 이 구조 위에서 최종 입지안이 민관협의회 의결을 거친 뒤에야 지정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A는 정부의 공공주도 입지 발굴 지원 제도를 단계적으로 활용했다. 먼저 국비 지원을 받아 복수의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후보 해역을 분석하고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적합입지를 선정했고, 이후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입지의 환경성·수용성·사업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추진했다.

3.1.1.1 입지 선정 단계의 선제적 소통 및 예비 구역 발굴

지자체 A는 후보지가 확정되기 전에 어업인 의견을 입지 선정 과정에 반영했다. 이 작업은 입지 발굴 단계의 지원사업으로 수행되었으며, 국책연구기관들이 풍황 자원과 해역 이용 상충을 분석하는 동시에 어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지자체가 먼저 후보지를 정한 뒤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지 선호도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수용성이 높은 구역을 좁혀나가는 절차를 적용했다.

입지 선호도 조사

입지 선호도 조사는 12개 대표 어업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각 단체에 설문지와 위치 지도를 배포하여 찬성·반대 구역을 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를 단체별 의견 지도로 종합하여, 선호 구역과 회피 구역을 도출하는 데 활용되었다.

워크숍 및 협의회 상정

조사 결과는 워크숍을 통해 다시 검토되었으며, 단체 간 의견 차이와 갈등 구역을 조정하고 누락 구역을 보완해 후보지 초안을 수정했다. 전문 기관의 기술적 검증을 거친 뒤, 예비 후보지 목록이 확정되어 민관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최종 입지안은 민관협의회 내 보고 및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의결을 거친 입지안이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의 근거가 되었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이 절차는 수용성을 사후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입지 발굴 단계에서부터 쌓아 올렸다. 미리 정해진 입지를 이해관계자에게 제시하는 대신, 선호도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수용성이 높은 구역을 먼저 식별함으로써 후보지가 공식 제안되기 전에 갈등 요인을 줄일 수 있었다. 어업인 의견과 기술 검토를 결합함으로써 사회적 수용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반대가 큰 입지를 본격적인 기술 검토가 이루어지기 전에 배제할 수 있었다. 최종 입지안을 행정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협의회에 상정한 것은, 협의가 이미 내려진 결정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절차가 아니라, 선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정식 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의미다.

3.1.1.2 전문기관 위탁 및 역할 분리

적합입지가 선정된 이후, 지자체 A는 후속 지원사업을 통해 선정된 입지의 수용성을 다시 검증하는 단계로 넘어갔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 A는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조사, 소통 프로그램, 이익공유 설계 전반을 전문기관에 위탁해 통합적으로 관리했다. 수용성 전문기관, 조사기관, 기술검토 기관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참여하는 구조가 마련되었으며, 이 구조는 절차 전반에 걸쳐 공익성, 전문성,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수용성 과업의 통합 관리

지자체 A는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조사, 소통, 상생방안 관련 과업을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병행하여 추진했다. 협의회 단독으로는 지역 갈등 요인, 어업 영향, 주민 요구, 이익공유 방안을 동시에 충분히 다루기가 어렵다. 사회영향조사, 입지 선호도 조사, 사회적 대화, 사전 어업영향조사, 이익공유 및 지역 상생 과업을 하나의 틀 안에서 함께 관리함으로써 공식 협의회 회의만으로는 담을 수 없는 영역까지 이해관계자 참여를 넓혔다.

과업별 조사·분석

사전 사회영향조사는 이해관계자 파악, 의견 수렴, 권력관계 분석, 요구사항 도출을 포함한다. 사전 어업영향조사는 어업 현황, 조업 방식, 영향 경로,

회피·완화 전략을 다룬다. 이익공유·지역 상생 과업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과 상생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과업별로 조사 대상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공익성과 중립성 확보

전문기관이 조사와 분석을 담당하고, 지자체는 행정적 추진 주체로 참여하며, 각 과업의 결과는 협의회와 공개 협의 절차를 통해 검토된다. 이러한 구조는 수용성 확보 여부가 지자체의 단독 판단에 좌우되지 않고, 조사와 협의에 근거해 판단되도록 한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지자체 A는 수용성 확보 과업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했다. 첫째, 입지 선정, 사회적 영향, 어업 영향, 이익공유·상생 방안을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함께 다루었다. 둘째, 과업별 대상과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 필요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전문기관에 조사·분석을 위탁함으로써 그 방법과 결과를 행정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행정 편향이라는 인식이 생길 여지를 줄였다.

3.1.1.3 정보공개 및 상시 소통 체계

지자체 A는 정식 회의 안팎에서 정보공개와 공개 협의를 확대했다.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워크숍, 민관협의회,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채널을 함께 운영했다. 정보 공유·의견 수렴·검토·재논의가 반복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오프라인 소통 프로그램

지자체 A는 어업인, 주민, 관련 단체, 시민사회, 민간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숙의경청회, 주민설명회, 워크숍, 원탁회의, 세미나, 포럼을 운영했다. 이 가운데 숙의경청회는 2주에 걸쳐 8차례 진행되었고, 표준화된 질의응답 기록이 남겨졌다. 이를 통해 사업 세부사항과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고, 수용성 확보, 특별법 대응, 지역 상생 방안에 관한 폭넓은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접점을 넓혔다.

온라인 정보공개

온라인 정보공개 체계도 함께 운영되었다. 공식 웹사이트는 재생에너지, 법령·정책, 사업 안내, 통계·현황, 참여·소통 항목으로 구성되어, 입지 선호도 조사 참여, 이익공유 모델, 사업 진행 상황, 설명회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홈페이지, 홍보 영상, 소셜미디어 채널은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사업 정보를 공개하고 참여 기회를 상시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첫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에 대한 접근성을 넓혔다. 둘째, 회의 전후뿐 아니라 다양한 비회의 채널을 통해서도 정보를 공개해 접근성을 높였다. 셋째, 정식 회의 외에도 보완적인 인터뷰, 원탁회의, 온라인 피드백 세션을 병행함으로써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을 함께 수렴했다.

3.1.1.4 지역 진단과 상생 방안 수립

지자체 A는 지역 진단과 이해관계자 조사를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구체화했다.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

사전 사회영향조사

사전 사회영향조사는 지역 현안과 갈등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적 민감도와 파급효과를 평가하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이해관계자 그룹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갈등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도 사용되었다. 이 과정은 상생 논의의 토대가 되는 지역 맥락과 갈등 구조를 먼저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전 어업영향조사

사전 어업영향조사는 어업 현황, 조업 방식, 영향 경로를 검토해 피해 예방·회피·완화 방안을 도출한다. 이는 보상 협상의 근거가 되는 동시에, 어업과의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데도 기여한다.

이익공유 및 상생 방안

이익공유·상생 방안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과 지역 맞춤형 상생 방안을

설계하는 작업이다. 지자체 A는 참여 주민, 인근 주민, 어업인 간의 참여 방식과 배분 구조를 검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참여 모델을 마련했다. 나아가 어업 공존, 교육, 돌봄·복지, 중장기 사업관리 전략을 포괄하는 부문별 계획을 상생 방안 마스터플랜으로 통합했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지자체 A는 상생 논의를 보상 중심 접근에서 지역 맞춤형 방안 수립으로 확장했다. 지역 진단, 어업 영향 평가, 이익공유 설계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지역의 특성과 핵심 수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이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토대로 기능하도록 했다.

3.1.1.5 시사점

지자체 A는 입지 검토, 이해관계자 참여, 조사·분석, 상생 논의라는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기능들을 개별 절차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틀 안에서 연결했다. 어업인 의견을 입지 선정에 사전 반영한 점, 조사 결과를 협의회 심의로 체계적으로 연결한 점, 지역별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생 논의를 진행한 점은 모두 구조적 정합성의 가치를 보여준다. 국내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사업에서는 이처럼 각 절차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설계 방식이 기본 원칙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3.1.2 지역 B: 민간주도 및 중립사무국 모델

지역 B는 어업, 경관·관광, 선박 항행, 환경 영향에 관한 우려가 해상풍력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사례다. 전통 어장이 사업 예정 부지 및 해저 케이블 경로와 겹쳤고, 지역경제는 해변과 해안 경관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보 부족, 협의 절차에 대한 불신, 대표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지역 B에서는 협의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설명회, 협의위원회, 정보공개, 상생 논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핵심 쟁점을 관리했다. 지역 B 사업은 아직 진행 중이므로, 아래 서술은 완결된 성과가 아니라 협의 절차의 설계와 현재까지 관찰된 결과에 관한 것이다.

3.1.2.1 중립적 운영과 독립적 협의회 운영체계

지역 B는 협의위원회 운영을 중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했다.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민관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자가 협의 절차를 직접 관리한다고 인식될 경우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남는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 B는 회의 준비, 안건 조율, 자료 배포, 회의록 작성을 포함한 협의 운영 전반을 별도 기관에 위탁했다.

중립적 진행

절차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진행자도 임명되었다. 지역 B에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소통 전문성을 함께 갖춘 지역 대학 교수가 이 역할을 맡았다. 이는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발언 균형을 관리하고, 감정적 대립을 중재하며, 쟁점을 협상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장치로 기능했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진행자를 임명한 것은 협상 과정에 대한 절차적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사업 시행자는 정보 제공과 이행 약속을, 제3의 운영기관은 절차 관리를, 진행자는 균형 있는 참여와 쟁점 정리를 각각 담당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협의가 특정 주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을 줄였다. 협의 절차를 관리하는 주체와 사업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가 분리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운영기관을 사업자가 지정했다는 사실은 남아 있었지만, 명확한 중립적 역할을 가진 별도 조직에 절차 관리를 맡김으로써 개발사가 협의 과정을 직접 통제한다는 인식을 완화하는 구조적 완충장치가 마련되었다.

3.1.2.2 위원 선정 체계 및 대표성 확보

지역 B 사례에서 위원 선정은 협의회 설계의 핵심 단계로 다뤄졌다. 단순 추천이나 관행적 배분 방식이 아니라, 중립 운영기관이 위탁한 학술기관의 심층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근거로 협의회 구성을 결정했다. 이는 선정 절차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위원이 사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정되었다는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해관계자 분석

학술기관은 지역 내 직·간접 이해관계자를 폭넓게 파악했다. 약 30개 이해관계자 그룹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인터뷰를 실시해 각 그룹의 참여 의사, 쟁점에 대한 입장, 영향력, 네트워크, 핵심 요구사항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어업인, 주민, 청년, 시민단체, 지역단체, 행정, 전문가 그룹의 입장을 분석해, 협의회가 실질적인 대표성을 갖추기 위해 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했다.

후보군 압축

심층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차 후보군을 작성했다. 이후 대표성, 전문성, 소통 역량, 참여 의지와 전체 구성의 균형이라는 기준에 따라 최종 후보를 확정했다. 이때 입장 분석 결과도 함께 적용되어, 찬성·반대·중립 입장의 대표자가 최종 구성에 의도적으로 균형 있게 포함되었다. 어느 위원이 어떤 집단을 대표하며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을 때, 협의 결과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지역 B의 위원 선정 체계는 대표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첫째, 학술기관의 심층 인터뷰와 이해관계자 분석이 참여자를 보다 객관적으로 식별하는 근거가 되었고, 협의회 구성이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도록 했다. 둘째, 1차 후보군과 최종 후보군을 구분하는 절차를 통해 위원 선정 절차에 대한 수용성을 높였다. 후보군을 폭넓게 검토한 뒤 기준에 따라 압축함으로써, 최종 선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3.1.2.3 정보공개 및 상시 소통 체계

지역 B는 회의 전후를 아우르는 정보공개·의견수렴 체계를 운영했다. 사전 공유, 회의 후 공개, 상시 소통을 연결하는 구조가 마련되었다. 이는 협의회 내부 논의와 지역사회의 여론 사이의 단절을 줄이기 위한 운영 방식이었다.

회의 전 공유

회의 전에 안건과 관련 자료를 미리 공유해 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당일 논의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가 높아졌다.

회의 후 공개

회의 후에는 결과와 회의록을 공개하고, 추가 질의와 보충 의견을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온라인 채널은 단순 공지뿐 아니라 질의·설명·피드백을 위한 상시 소통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해관계자를 위해 오프라인 자료 배포도 병행되었다.

의견 수렴

개별 위원들은 회의 내용을 소속 단체와 지역사회에 전달하고, 내부 의견을 수렴해 협의회에 다시 반영했다. 이 구조는 협의회 논의를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지역 B는 정보공개와 의견수렴을 하나의 통합된 흐름으로 운영했다. 첫째, 회의 전 공유·회의 후 공개·상시 의견수렴을 결합함으로써, 논의 내용이 소수 참석자에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로 확산되었다. 둘째, 위원과 소속 단체 간 피드백 체계를 마련해 협의회 논의를 지역사회의 의견과 다시 연결했다. 셋째,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구조를 통해 정보 부족에서 비롯되는 오해를 줄이고 협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

3.1.2.4 지역 진단과 상생 방안 수립

지역 B는 지역 진단과 주민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상생 방안을 개발했다. 이 방안들은 부문별 과제로 정리되어 단기적 이익과 중장기 지역발전 목표를 함께 다루었다.

지역 진단

제3의 기관이 제공하는 지역역량지수(LCI)를 활용해 약 50개 지표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와 비교함으로써, 협의회는 인구구조, 경제활동, 생활 인프라, 사회안전, 보건, 환경 등 여러 영역에서 지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환경과 생활 인프라 측면의 강점, 그리고 인구 성장 잠재력과 경제 활동 측면의 약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협의회는 청년 고용, 산업 연계, 관광 활성화, 교육·인재 양성과 같은 중장기 과제를 검토했다.

정량·정성 조사

설문조사는 해상풍력에 대한 인식, 기대 이익, 우려사항, 주민 참여 의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약 40명이 참여한 그룹 심층 인터뷰는 그룹별 구체적 요구, 수용 조건, 선호하는 상생 유형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의견을 종합하여 주민·이해관계자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부문별 상생 방안 도출

상생 방안은 어업 영향 대응, 지역경제·관광, 고용, 교육·인재 양성, 환경·인프라 등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다시 단기 실행 과제와 중장기 전략 과제로 구분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논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우선순위가 세워졌다.

이행계획 수립

지역 B에서는 상생 의제를 정리한 뒤, 각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자원 조달 방법도 함께 검토했다. 이를 통해 상생 방안을 누가 어떤 재원으로 이행할 것인지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분석: 왜 작동하는가

지역 B는 상생 방안을 실행 가능한 과제로 전환했다. 첫째, 지역 진단과 주민 인식 조사를 먼저 실시함으로써, 협의회는 특정 집단의 요구만을 반복하는 대신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둘째, 상생 계획을 부문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함으로써, 협의회는 당면 현안과 장기 과제를 동시에 다룰 수 있었다. 셋째, 이해관계자별 역할과 자원 조달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상생 방안이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전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3.1.2.5 시사점

지역 B 사례는 적절한 구조적 조건이 갖춰졌을 때 민관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B에서 확립된 4가지 요소, 즉 제3의 사무국을 통한 운영 중립성, 투명하고 기준에 기반한 위원 선정, 회의 전후를 아우르는 정보공개와 상시 의견수렴, 근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상생 방안은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틀로 작동한다. 국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설계에서도 이 요소들은 선택적으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취급되어야 한다.

3.1.3 성공 사례의 공통점

지자체 A와 지역 B는 각각 공공주도와 민간주도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협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든 구조적 조건은 동일하다. 동시에 두 사례는 같은 근본 과제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서로 경쟁하는 모델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모델이다.

실질적인 협의 기능

두 사례 모두 협의 결과가 실제 의사결정에 직접 반영되도록 했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지자체 A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입지 선정 과정에 직접 반영해, 어업인 설문 결과를 후보지 조정과 협의회 의결에 연결했다. 지역 B는 쟁점이 되는 사안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협의회를 설계함으로써, 핵심 갈등 사안과 상생 방안에 대한 논의가 협의 체계 바깥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다.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두 사례 모두 중립성 확보 장치를 도입했지만, 문제의 다른 측면을 다루었다. 지자체 A는 조사·분석 기능을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춰, 자료에 대한 행정 편향 우려를 줄였다. 지역 B는 절차 자체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춰, 운영과 진행 역할을 분리해 두 역할 모두 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주체에 맡겼다. 전자는 정보에 대한 신뢰를, 후자는 절차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 것이다.

대표성 있는 참여 구성

두 사례 모두 ‘누가, 왜 참여하는가’에 대한 사전 근거를 마련했다. 지자체 A는 입지 선호도 조사를 통해 12개 대표 어업단체와 직접 협의함으로써 초기 단계부터 참여의 폭을 확보했다. 지역 B는 학술기관의 이해관계자 매핑과, 이에 이어지는 기준에 따른 단계별 선정 절차를 통해 각 위원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상시 소통

두 사례 모두 정보 흐름을 정식 회의 범위 너머로 확장했지만, 그 방식은 서로 달랐다. 지자체 A는 다수의 오프라인·온라인 채널을 병행 운영해 이해관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 지역 B는 회의 전 공유, 회의 후 공개, 그리고 협의회 위원을 통해 소속 단체로 이어지는 피드백 순환이라는 정보 순환의 연속성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정보 접근성이라는 동일한 과제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접근이다.

보상을 넘어서는 상생 구조

두 사례 모두 상생 논의를 일회성 금전 보상을 넘어서 수준으로 확장했지만, 그 전환 방식은 달랐다. 지자체 A는 사회영향 기초조사, 어업영향평가, 이익공유 설계를 하나의 위탁 과업으로 통합해, 상생 틀이 근거 자료 위에 직접 세워지도록 했다. 지역 B는 지역 진단과 주민 인식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결과를 활용해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부문별 상생 의제를 구성했다. 두 사례 모두 상생방안을 일률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지역의 근거 자료 위에 세웠다.

두 사례는 단일한 모범 사례가 아니라 일련의 조건을 보여준다. 즉 실질적인 협의 권한, 구조적 중립성, 대표성 있는 참여, 접근 가능한 정보, 근거 기반의 상생 방안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지역 여건과 추진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설계 선택을 통해서도 충족될 수 있다.

3.2 갈등 사례: 반복되는 패턴과 교훈

3.2.1 갈등 사례

지자체 1

지자체 1은 2018년부터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15개 이상의 발전사업 허가가 신청되었지만, 사업 절차가 주민설명회 없이 진행되었고 이는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로 이어졌다. 2020년 지자체는 상생협약을 체결했지만, 이 협약은 곧 파기되었다.

2020년 11월 민관협의회가 출범했지만 문제는 계속되었다. 10곳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업 방식도 다양해, 일부 어업단체와의 보상 협상만이 이루어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일부 단체는 조업 중단 조건으로 수십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했고, 다른 단체들은 협의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지자체 2

지자체 2에서는 2018년부터 여러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풍황 조사를 시작했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다수 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가 지역 수용성 문제로 보류되거나, 허가 이후에도 어업인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2021년 8월 지자체는 민관협의회 구성을 시도했지만, 대표성 문제를 둘러싸고 어업단체 간 갈등이 발생했다. 어업인과 사업자 간의 갈등도 계속되었다. 2022년 지자체장이 교체되어 해상풍력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사업자는 투자 비용을 이유로 사업 중단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지자체 3

지자체 3에서는 2018년부터 여러 민간 사업자가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해왔다. 사업자들은 풍황·파랑 계측을 시작하고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지만, 어업인들은 사전 공지나 설명 없이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어업인들은 계획된 사업 부지가 기존 어장과 겹쳐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고 주장했다. 이후 다른 사업자들의 인허가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일부는 승인되고 일부는 보류되었다.

2021년 일부 사업자는 어업인 수용성 협약 체결식을 열었지만, 어업인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되었다며 서명을 거부했다. 어업인들은 중앙부처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고, 이후 사업자들의 발전사업 허가가 잇달아 취소되었다. 지자체 3은 새로운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경청회를 진행 중이다.

3.2.2 갈등의 구조적 원인



세 개 지자체 갈등 사례와 기존 국내 연구를 종합하면, 갈등은 네 가지 구조적 원인으로 귀결된다.

절차적 정당성 부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알린다’는 방식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되며, 이해관계자에게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초기 절차의 불공정성은 이후의 상생협약, 보상 협상, 민관협의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신뢰를 지속적으로 훼손한다.

정보 비대칭과 왜곡된 대표성

사업 관련 정보가 특정 집단에 집중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제공되면서 제도적 수준의 정보 비대칭이 심화되었다. 행정기관이 협의 상대를 임의로 지정하거나 협상 권한을 특정 개인에게 집중시킨 경우, 대표성의 정당성과 지역사회를 대신해 발언할 권한을 누가 갖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민관협의회나 상생협약이 마련된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이후 무효화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생계 침해와 보상 구조의 한계

조업 구역 축소, 어장 훼손, 항로 제한은 어업인들에게 생계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피해 산정 기준과 보상 체계가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행정 지침에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전 보상에만 한정된 협상 구조에서는 지역 단위의 장기적 생계 안정이나 생태계 복원이 고려되지 않았고, 보상 대상과 규모가 특정 집단에 편중되면서 오히려 어업인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협의회의 형식화

협의회가 마련되더라도 실질적인 권한이 없거나 지자체와 사업자가 주도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 절차로 협의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역상생기금이나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과 같은 새로운 시도도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법적 구속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3.2.3 국내 사례의 교훈

성공 사례(지자체 A, 지역 B)와 갈등 사례(지자체 1, 2, 3)를 비교하면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성공 사례에서 확인된 조건

- 협의회에 실질적 권한 부여(입지 선정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영향력)
- 중립성 확보(공익위원, 중립적인 운영 사무국, 전문가 자문단)
- 투명한 정보공개
- 조직 단위의 대표성(수협, 어촌계)

갈등 사례의 공통점

- 절차적 정당성 부재(협의 없이 진행)
- 불명확한 대표성(누가 지역사회를 대변하는지에 대한 정당성 다툼)
- 형식적 절차(권한 없음, 의견 미반영)
- 이익 배분의 불투명성

핵심 교훈

국내 사례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협의 구조였다. 관건은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협의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중립성을 확보하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구조를 설계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협의회가 형식적으로만 구성되고 절차가 생략되면 갈등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비교 분석: 여섯 가지 요인



4.1 요인 1: 법적 강제력과 협의의 법정화

해외 사례

영국은 「Planning Act 2008」 제47조에 따라 DCO 신청 전 SOCC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다. 적정한 SOCC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 단계에서 DCO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일본은 「해역 이용 재생에너지 발전 촉진법」에 따라 법정협의회 운영을 의무화했다. 실제로 협의회 차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구역은 지정 절차로 나아가지 못한다. 덴마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EIA 공청회를 의무화했으며, 이는 DEA의 인허가 절차의 일부로 운영된다.

공통점

세 나라 모두 협의를 법정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사례에서 법 체계는 협의 여부를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지 않는다. 협의는 임의적 약속이 아니라 절차적 전제조건이며, 협의가 없을 경우 사업 진행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뒤따른다.

국내 비교

성공 사례인 지자체 A는 협의회 의결을 거친 입지안만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으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설계했다. 반면 갈등 사례들에서는 협의 없이 허가가 진행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국내 해상풍력법도 민관협의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협의회 합의를 구역 지정의 필수 조건으로 구체화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핵심

협회의 법정화는 단순히 협의회를 설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협회가 없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구조적 강제력을 의미한다. 적절한 SOCC를 제출하지 않으면 DCO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영국 모델과, 협의회 합의가 사실상 구역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작동하는 일본 모델 모두 이러한 접근을 보여준다.

4.2 요인 2: 협의 시점의 전진 배치

해외 사례

일본은 촉진구역 지정 단계 이전에 협의회를 구성한다. 입지가 확정되기 전에 협이가 완료되는 것이다. 덴마크의 해양공간계획(MSP)은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어업인과 주민을 참여시켜 풍력 적합 구역을 사전 조정한다. 영국의 SOCC는 DCO 신청 이전에 제출·이행되어야 한다.

공통점

모든 사례에서 협의는 의사결정 단계 이전으로 앞당겨져 있다. 투자 결정 이전에 협이가 자리 잡으면, 그 협의 결과가 여전히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이해관계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유인이 생긴다. 반대로 협의가 투자 약정 이후에 이루어지면, 그 협의는 이미 내려진 결정에 대한 수용을 확보하는 절차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설계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여지도 제한된다.

국내 비교

모든 갈등 사례에서 협의 시도는 인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있었다. 사업자가 이미 선정되고 투자가 확정된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반면 지자체 A는 공공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입지 선정 이전에 민관협의회를 구성했고 합의를 통해 입지를 확정했다.

핵심

협의 시점을 앞당기면 협의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 사후 협의는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한 수용을 구하는 방향으로 흐르지만, 사전 협의는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과 덴마크의 경우처럼, 협의는 입지 선정과 공간계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4.3 요인 3: 조직 단위 대표성 및 양측의 균형

해외 사례

영국에서는 FIR이 어업계 대표로, CFLO가 개발사 측 연락관으로 지정된다. 양측 모두에 공식 대표가 있어 균형이 확보된다. 덴마크에서는 DFPO가 어업계를 조직 단위로 대표해 사업자와 협상한다. 일본에서는 어업협동조합이 어업권 관리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협의에 참여한다.

공통점

모든 사례에서 협의의 주체는 개별 어업인이 아니라 조직이다. 개별 어업인이 분산된 방식으로 참여하면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합의에 도달하기도 어렵다. 조직이 내부 조정을 거쳐 집단적 의사를 형성하면 협상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나아가 영국의 CFLO/FIR처럼 양측의 균형을 제도화하면, 어느 한쪽이 협의를 주도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

국내 비교

성공 사례인 지역 B에서는 양측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중립 운영사무국이 마련되었다. 운영 사무국이 학술기관과 함께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대표성을 설계하였다. 갈등 사례들에서는 대표성이 불명확했다. 지자체 1의 경우 사업자가 10곳 이상 중복 진행하며 조업 방식도 다양해, 정당한 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이 빈번했다. 일부 단체만 협의에 참여하고 다른 단체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핵심

수협과 어촌계를 임시적·개별적 참여 주체가 아니라 정식 협상 당사자로 지정하면, 내부 조정과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반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의 CFLO/FIR 모델처럼 협의 양측에 동등한 공식 대표 구조를 마련하면 어느 한쪽이 절차를 주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4.4 요인 4: 정보 투명성 및 전문가 지원

해외 사례

영국의 KIS-ORCA는 터빈·케이블 위치를 공개하며, Kingfisher Bulletin은 항행 통지와 공사 일정을 함께 공개한다. 일본에서는 독립 전문가가 법정협의회에 참여해 기술적 사안에 대한 근거 기반 심의를 뒷받침한다.

공통점

모든 사례는 정보공개를 실질적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다. 사업자가 정보를 독점하면 정보 은폐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커질 수 있다. 양측이 동일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대등한 협의가 가능하다. 나아가 전문가 지원은 입장 대립이 아니라 근거 기반의 심의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 비교

성공 사례인 지역 B에서는 중립 운영사무국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전문가 자문집단이 기술적 질의에 답변했다. 갈등 사례들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심각했다. 어업인들은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사업자는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어느 쪽의 주장도 상대측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소통에 대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있었음을 보여준다.

핵심

KIS-ORCA와 같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협의회 회의록·자료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협의회 하위에 전문가 워킹그룹을 두어 기술적 쟁점을 과학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4.5 요인 5: 이익공유 및 장기 모니터링

해외 사례

덴마크의 VE-보너스는 설비 용량, 발전량, 전력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현금 보너스를 지급해 주민을 수혜자로 만든다. 영국의 FMMS와 FLCP는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장기 모니터링을 통해 어업에 대한 영향을 추적하고 대응한다. 일본은 입찰 평가에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조정, 지역경제 기여(240점 중 40점)를 포함해 협의의 질을 경쟁 요소로 삼는다.

공통점

모든 사례는 ‘보상’에서 ‘이익공유’로 전환하고 있다.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약속 이행을 담보한다. 덴마크의 VE-보너스처럼 주민을 피해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 사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참여자로 전환하는 구조는 사회적 수용성을 높인다.

국내 비교

성공 사례들은 지역상생기금, 주민참여형 이익공유를 논의했다. 갈등 사례들은 보상 기준이 불명확했고, 일부만 보상을 받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나아가 여러 사례에서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사업 착수 이후 지켜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장기적인 신뢰가 훼손되었다.

핵심

VE-보너스와 같은 발전량 연동 이익공유를 법제화하고, FMMS와 유사한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최초 보상 시점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사업 전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4.6 요인 6: 통합 시스템 설계

해외 사례

영국에서는 SOCC, CFWG, KIS-ORCA, FMMS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계획 단계(SOCC), 공사 단계(CFWG·KIS-ORCA), 운영 단계(FMMS)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일본에서는 법정협의회, 경쟁 입찰, 어업협동조합이 상호 보완한다. 협의회는 구역 지정에 관한 협의를, 입찰 절차는

품질 경쟁을, 조합은 효율성과 정당성을 담당한다.

공통점

모든 사례는 개별 제도가 아니라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되어 있다.

SOC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CFWG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여러 요소가 연결되어, 협의 결과가 후속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되는 구조를 만든다. 일본처럼 협의-구역 지정-경쟁 입찰의 순서를 강제함으로써,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한다.

국내 비교

성공 사례인 지자체 A에서는 민관협의회, 입지 선정, 집적화단지 신청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갈등 사례들은 개별 제도가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통합성이 없었다. 설명회는 열렸지만 협의회와 연결되지 않았고, 보상 협상은 이루어졌지만 모니터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핵심

법정 강제력, 정보공개, 전문가 지원, 장기 모니터링이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나의 통합된 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 개별 제도를 각각 도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요소가 사업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4.7 종합: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

여섯 가지 요인을 비교하면 뚜렷한 패턴이 드러난다.

요인	해외 성공 사례	국내 갈등 사례
법적 강제력	협의 없이는 다음 단계 진행 불가	협의 없이 허가 절차 진행
협의 시점	입지 선정 이전 협의	허가 이후 협의 시도
조직 단위 대표성	조직 단위 대표 + 양측 균형	불명확한 대표성

요인	해외 성공 사례	국내 갈등 사례
정보 투명성	정보공개 + 전문가 지원	정보 비대칭
이익공유	장기 이익공유 + 모니터링	일회성 보상, 불신
통합 시스템 설계	시스템 전반의 통합	산발적 운영

핵심 교훈

여섯 가지 요인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패턴은 일관된다. 결과를 좌우하는 변수는 개별 행위자의 선의가 아니라 그 행위자가 놓인 구조적 조건의 설계다. 명확한 법적 강제력, 이른 협의 시점, 조직 단위 대표성, 정보 투명성, 공정한 이익공유, 통합 시스템 설계라는 조건이 잘 설계되어 있을 때, 협의는 실효성 있게 작동한다.



5 정책 합의



5.1 국내 협의 시스템 구축 방향

본 장은 비교 분석을 통해 도출한 여섯 가지 성공 요인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왜 협의가 중요하며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다룬다. 민관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방법은 별도의 설계 가이드인 『한국형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설계 가이드: 해상풍력법 하위법령에서 실무까지』에서 상세히 다룬다.

법제도 개선: 협의의 법적 강제력 확보

해상풍력법은 민관협의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은 협의회의 합의가 발전지구 지정 및 인허가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조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민관협의회 내 합의는 발전지구 지정의 전제조건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둘째,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위해 조정 기간 부여, 중재 절차, 구역 지정 보류와 같은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독립적인 기관이 협의 과정이 실질적 참여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영국의 '협의 적정성 의견' 제도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이 된다.

협의 시점 조정: 지구 지정과 사전 협의의 연계

시행령은 후보 지구 선정 단계에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 협의회는 후보 지구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어업 구역과의 중첩을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구역 경계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 인허가 사업에도 시사점을 준다. 이미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라도, 공사 착공 전에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사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인허가 이후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협의를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공동 조정 과정으로 설계하면 장기화된 갈등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협의 주체 명확화: 수협·어촌계의 법적 지위 강화

시행령은 수협과 어촌계를 민관협의회의 공식 구성원으로 지정하고, 어업권 관리 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협의 구조에 반영해야 한다. 동시에 조합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여, 조합 대표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정보 인프라 구축: 플랫폼과 전문가 지원

두 가지 유형의 정보 인프라가 필요하다. 첫째, KIS-ORCA를 참고한 해상풍력 정보 통합 플랫폼이다. 발전지구 위치, 터빈 배치, 해저 케이블 경로, 공사 일정, 어장 분포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어업인·지역주민·연구자가 동일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의회 하위에 전문가 워킹그룹을 두어 어업 영향, 환경 영향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해 공정한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전문가 자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익공유 제도화: 보상에서 공존으로

일회성 금전 보상을 넘어 구조적인 이익공유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첫째, 발전량과 연동한 이익공유를 법제화하여 사업 운영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이익이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가 공사 및 운영 단계에서

어업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협의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장기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추가 완화 조치를 취하는 적응적 관리 원칙을 적용하면, 영향 관리가 최초 보상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안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무라는 신호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셋째, 사업자 선정 기준에 상생 방안을 포함하고, 어업계 협의 계획, 지역 고용 목표, 지역 기업 참여 비율, 지역기금 조성 여부를 평가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통합 시스템 설계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방향은 개별적으로 도입하면 효과가 제한적이다. 사전 협의부터 지구 지정, 사업자 선정, 공사 관리, 운영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전제조건이 되는 연결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구조의 핵심은 협의 없이는 지구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구 지정 없이는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하며, 모니터링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조치가 요구된다는 원칙이다. 과제는 개별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의 정합적인 통합 시스템으로 설계하는 데 있다.

5.2 결론

이 보고서의 핵심 교훈은 구조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해외 성공 사례의 공통점은 특정 개인이나 조직이 아니라, 이른 시점의 협의를 강제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였다. 마찬가지로 국내 갈등 사례의 공통점 역시 특정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협의 절차의 부재, 불명확한 대표성, 정보 비대칭과 같은 구조적 문제였다.

해상풍력법은 이러한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그러나 법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시행령이 협의회의 권한, 구성 시점, 합의 기준, 정보공개 범위, 이익공유 방식, 모니터링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기존 인허가 사업자에게도, 이 보고서가 제시한 여섯 가지 협의 설계 원칙은 갈등을 예방하고 사업 리스크를 줄이는 실무적 지침이 된다.

협의를 사업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이 아니다. 제대로 설계된 협의는 사업이 지속가능한 기반 위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다. 이 보고서의 전략적 방향과 설계 가이드의 구체적 설계 방법을 함께 활용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공존의 구조 위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Ocean Energy Pathway

오션에너지패스웨이

전 세계 해상풍력의 확산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단체입니다.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촉진하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국 정부와 주요 의사결정자에게 독립적인 전문 자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 산업, 생태계 보전 분야의 글로벌 리더들과 협력하여 해상풍력의 장기적 성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두고 한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호주,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https://oceanenergypathway.org/>



한국환경정책학회

다양한 정책과제의 기획과 발굴, 연구 용역 수행, 기술 지원과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과 제도 수립 및 이행에도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https://kepas.or.kr/>

ROOT-ENERGY

루트에너지

루트에너지는 지역공동체와 협력하여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주민수용성 제고를 이끄는 글로벌 사회적기업(B Corp)입니다. 해상풍력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 현장에서 사회영향 조사와 이해관계자 분석을 토대로
민관협의회 등 거버넌스의 구성·운영을 지원하고, 숙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설계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이익을 얻는 커뮤니티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정부·지자체·사업자와 지역사회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https://rootenergy.kr/>



